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2022년 산림환경연구원 북부지원 자체감사 —

2022. 6.

1. 행정상 일람표

(단위 : 천 원)

| 번호 | 소 관                | 건 명                        | 행정상 조치 |    | 재 정 상 조 치 |     |    |    |    |    |
|----|--------------------|----------------------------|--------|----|-----------|-----|----|----|----|----|
|    |                    |                            | 시정     | 주의 | 회수        | 금액  | 감액 | 금액 | 추징 | 금액 |
| 계  |                    | 7건                         | 2      | 5  | 1         | 0.3 | 0  | 0  | 0  | 0  |
| 1  | 산림환경연구원<br>북 부 지 원 | 법인신용카드 사용 및 계좌<br>관리 소홀    | 1      |    | 1         | 0.3 |    |    |    |    |
| 2  | 산림환경연구원<br>북 부 지 원 |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부적정             |        | 1  |           |     |    |    |    |    |
| 3  | 산림환경연구원<br>북 부 지 원 | 부가가치세 납부 업무 소홀             | 1      |    |           |     |    |    |    |    |
| 4  | 산림환경연구원<br>북 부 지 원 |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사무<br>인계·인수 소홀   |        | 1  |           |     |    |    |    |    |
| 5  | 산림환경연구원<br>북 부 지 원 | 사방사업 및 임도시설사업<br>타당성평가 부적정 |        | 1  |           |     |    |    |    |    |
| 6  | 산림환경연구원<br>북 부 지 원 | 산림사업 하자 최종검사<br>부적정        |        | 1  |           |     |    |    |    |    |
| 7  | 산림환경연구원<br>북 부 지 원 | 도유림관리사 난방용<br>유류관리 부적정     |        | 1  |           |     |    |    |    |    |

## 2. 처분요구일람표

|    |                                    |    |
|----|------------------------------------|----|
| 1. | 법인신용카드 사용 및 계좌 관리 소홀 (시정) .....    | 1  |
| 2. |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부적정 (주의) .....          | 4  |
| 3. | 부가가치세 납부 업무 소홀 (시정) .....          | 6  |
| 4. |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사무 인계·인수 소홀 (주의) .....   | 8  |
| 5. | 사방사업 및 임도시설사업 타당성평가 부적정 (주의) ..... | 10 |
| 6. | 산림사업 하자 최종검사 부적정 (주의) .....        | 13 |
| 7. | 도유림관리사 난방용 유류관리 부적정(주의) .....      | 16 |

# 경 상 북 도

## 시 정 요 구

제 목 법인신용카드 사용 및 계좌 관리 소홀  
소 관 청 산림환경연구원 북부지원  
관 계 부 서  
내 용

산림환경연구원 북부지원에서는 법인신용카드로 결제한 대금을 집행하고 그 결제계좌를 관리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경상북도 재무회계 규칙」(경상북도 규칙 제2910호, 2018.12.10.) 제49조에 따르면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거나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부채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카드대금 결제일까지 해당 예산과목에서 실·과별 카드이용대금 결제계좌로 입금 조치하여야 하고,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카드사용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자치단체에 연 1회 이상 세입조치 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회계법」 제20조에 따르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은 법령,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거나 수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카드대금 및 자동이체 계좌에는 청구된 금액만큼의 카드대금과 자동이체금액이 청구일 전 임시 보관된 후 카드회사로 인출되도록 하여야 하고, 관련 포인트 등이 입금되면 연 1회 이상 세입조치 하여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 1. 카드 결제 대금 및 전기료 납부 지연

위 관서에서는 아래 [표1]과 같이 카드대금 및 전기료 납부 연체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다.

#### **[표] 카드 및 자동이체 연체 등 현황**

- 이하 생략 -

### 2. 세입조치 소홀

위 관서에서는 아래 [표2]와 같이 통장에 입금된 유류포인트 등을 세입조치 없이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다.

#### **[표2] 세입조치 미비 현황**

- 이하 생략 -

### 3. 연체금 처리 미비

2019.9.23. 자동이체 계좌(\*\*\*-\*\*-\*\*\*\*\*)에서 인출 예정이던 유류대금 326,470원 중 64,070원이 통장에 남아 있던 잔액으로 인출되었고, 나머지 262,400원은 잔액부족으로 연체됨에 따라 연체료 321원이 발생하였으며 카드대금으로 326,470원이 2019.9.27. 자동이체 계좌로 입금되자 연체료를 포함한 262,721원이 2019.9.27. 인출되었다.

그런데 당초 잔액으로 남아 있던 64,070원은 2019.7.26. 대구지방조달청에서

입금된 금액으로 이미 세입조치를 했어야 했던 항목이었다.

그 결과 결제대금 지연 입금으로 발생한 연체금 321원이 예산으로 지급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조치할 사항      산림환경연구원 북부지원장은**

- ① 결제대금 지연 입금으로 발생한 연체료 321원은 당시 업무 담당자로부터 징수하여 결제계좌에 입금 하시고, 자동이체 및 카드대금 결제 계좌의 잔액을 일제 점검하여 세입 처리 또는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 등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② 앞으로 카드 결제계좌 및 자동이체 계좌 관리를 철저히 하여 결제대금이 연체되거나 세입조치되어야 할 금액이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경 상 북 도

## 주 의 요 구

제 목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부적정  
소 관 청 산림환경연구원 북부지원  
관 계 부 서  
내 용

산림환경연구원 북부지원에서는 세입세출외현금 입·출금과 관련된 계좌를 관리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경상북도 재무회계 규칙」(경상북도 규칙 제2910호, 2018.12.10.) 제49조에 따르면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거나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부채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76조에 따르면 금고는 세입세출외현금을 받았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출납원에게 납입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하고, 출납원은 통지서에 따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수납등록 후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를 정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훈령 제77조에 따르면 세입세출외현금 반환청구자가 세입세출외현금을 계좌로 입금 받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반환 청구하여야 하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같은 조제2항에 따라 금고에 통지하여야 하며 세입세출

외현금을 이월하는 경우에는 세부내역을 부기하여 이월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세입세출외현금 계좌로 입출금이 이루어진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 출납부와 계좌 내역을 정리하여 불일치 내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정당한 채주가 있는 입금액은 지급이나 세입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세입세출외현금을 관리하면서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대로 수납하고 반환하지 않아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와 세입세출외현금통장 잔액이 일치하지 않게 하였고,

세입세출외현금을 받았을 때 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 출납부를 정리하여 매일의 잔액을 일치시켜야 하는데도 최대 81일간 불일치 상태로 방치하다 처리하는 등 세입세출외현금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세입세출외현금 출납부와 통장 불일치 내역**

- 이하 생략 -

**조치할 사항      산림환경연구원 북부지원장은**

앞으로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와 출납부가 일치하도록 관리하여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 경 상 북 도

## 시 정 요 구

제 목 부가가치세 납부 업무 소홀  
소 관 청 산림환경연구원 북부지원  
관 계 부 서  
내 용

산림환경연구원 북부지원에서는 공유재산 사용료를 부과·징수한 후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6호에 따르면 부동산임대업은 용역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은 과세사업으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제3호 및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납세의 의무가 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3호에 따라 우리 도에서 대부하는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닌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르면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제1기는 1.1.부터 6.30.까지 제2기는 7.1.부터 12.31.까지로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49조에 따르면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세액을 신고

하고 신고를 할 때에는 징수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 아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다.

**[표] 부가가치세 미납부 내역**

- 이하 생략 -

**조치할 사항      산림환경연구원 북부지원장은**

납부하지 않고 있는 부가가치세 445,830원을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납부 등 조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관련 세금을 납부 지연하지 않도록 규정에 맞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경 상 북 도

## 주 의 요 구

제 목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사무 인계·인수 소홀  
소 관 청 산림환경연구원 북부지원  
관 계 부 서  
내 용

산림환경연구원 북부지원에서는 세입세출외현금 입출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2021.1.1. 제172호) 제95조 및 제96조에 따르면 출납원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인계자(전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후임자)에게 인계하도록 되어 있고,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전일로서 현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날인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인계자는 예금잔액증명을 첨부한 현금 및 예금현재액조서와 인계할 장부, 증빙서류의 목록을 각 3부 작성하여 인수자의 입회하에 주고 받은 후 현금 현재액조서 또는 현금 및 목록에 수수일자와 “수수를 필하였음”이라고 기재하여 인계인수자 연서날인 후 각각 1부씩 보존하고 1부는 인계보고서에 붙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인사이동 등으로 출납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예금잔액증명을 첨부한 현금 및 예금현재액 조서 등을 첨부하여 인계인수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인계·인수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2021.7.19.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이 변경되었는데도 예금잔액증명을 첨부한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사무의 인계를 절차대로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세입세출외현금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투명한 운용을 저해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산림환경연구원 북부지원장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변경 시 인계인수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경 상 북 도

## 주 의 요 구

|         |                         |
|---------|-------------------------|
| 제 목     | 사방사업 및 임도시설사업 타당성평가 부적정 |
| 소 관 청   | 산림환경연구원 북부지원            |
| 관 계 부 서 |                         |
| 내 용     |                         |

산림환경연구원 북부지원에서는 사방사업 및 임도시설사업 타당성 평가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 1.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부적정

「사방사업법」 제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및 위탁업무 처리규정」 제4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사방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산사태취약지역을 고려하여 사업의 필요성, 적합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타당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매년 관할 구역 중 산사태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이 필요한 지역을 조사하여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관련 서식에 따라 사업대상지 목록을 작성한 후 등재된 개소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타당성평가를 실시토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규정 제5조에 따르면 타당성평가는 사방사업대상지로 선정된 후 사방사업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사방사업을 실시코자 한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 매년 사방사업대상지 목록을 작성 후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 타당성평가를 통해 사업대상지를 선정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아래 [표1]과 같이 사방사업(△△△△△△) 등 28개소

사업에 대하여 실시설계 전 타당성평가를 이행하여야 하는데도 24건은 설계기간 중 평가를 실시하였고, 나머지 4건은 사업대상지 목록에 등재하여 타당성평가를 하여야 하는데도 사업대상지 목록에 등재 없이 타당성평가를 한 후 실시설계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실시설계 용역 입찰시 작성된 과업지시서에는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타당성평가 기간 중 실시설계를 시행하거나 설계가 이미 완료된 사업도 있었다.

#### **[표1] 사방사업 타당성 평가 부적정 현황**

- 이하 생략 -

그 결과 사방사업 대상지에 적합한 공법 및 시설 등에 관한 전문가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산사태, 토석류로 인한 피해 예방 또는 감소 효과가 저하 될 우려가 있다.

#### **2. 임도설치 타당성평가 시기 미 준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임도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및 제11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임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시설의 필요성, 적합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타당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타당성평가 결과 노선이 확정되면 사업시행 전년도 7월말까지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임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전년도 7월말 까지 타당성평가를 실시하여 시설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아래 [표2]와 같이 2019년도 작업임도사업(▲▲▲▲▲)

▲) 등 13개소 사업에 대하여 임도설치사업을 진행하면서 타당성평가를 설치시기 전년도 7월말까지 완료하여야 하는데도 10건은 전년도 10월~11월에 실시하여 지연하였고, 나머지 3건에 대하여는 설치연도에서야 실시함으로써 임도설치사업 검토 및 시행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2] 임도설치 타당성 평가 부적정 현황**

- 이하 생략 -

**조치할 사항      산림환경연구원 북부지원장은**

앞으로 「사업사업법」 및 「임도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사방 및 임도시설 타당성평가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경 상 북 도

## 주 의 요 구

제 목 산림사업 하자 최종검사 부적정  
소 관 청 산림환경연구원 북부지원  
관 계 부 서  
내 용

산림환경연구원 북부지원에서는 매년 상·하반기로 정기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하자보증기간 만료가 도래되는 사업에 대하여 최종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계약상대자는 하자검사에 입회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는 경우에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시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검사를 실시하고 하자검사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붙임]과 같이 하자만료일 14일 전에 실시하여야 하는 최종검사를 2019년 4건, 2020년 3건, 2021년 117건을 실시하지 않았다.

그 결과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여 예산을 낭비할 우려가 있는 등 하자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산림환경연구원 북부지원장은

앞으로 하자보증기간 만료가 도래되는 사업에 대하여 최종검사를 실시하는 등 하자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붙임]

하자 최종검사 대상 미실시 현황

- 내용 생략 -

# 경 상 북 도

## 주 의 요 구

|         |                     |
|---------|---------------------|
| 제 목     | 도유림관리사 난방용 유류관리 부적정 |
| 소 관 청   | 산림환경연구원 북부지원        |
| 관 계 부 서 |                     |
| 내 용     |                     |

산림환경연구원 북부지원에서는 도유림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사를 설치하고 관리사 관리에 필요한 유류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경상북도 물품관리 조례」 제5조 및 제24조에 따르면 소모품<sup>1)</sup>이라 함은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및 성질이 사용함으로써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과 공작물 기타의 구성품이 되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르면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행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외에는 물품출납에 관한 사항을 장부<sup>2)</sup>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물품 수입 및 출급원장 등 자치법규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유류 출납 및 재고량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2019. 12월부터 2022. 2월까지 청송군 소재 도유림관리사에 총 6건(2,500ℓ, 금액 2,371,220원)의 난방용 유류에 대한

1) 물품을 비품과 소모품으로 구분하고, 소모품은 약품, 유류, 수선용 재료 등을 말함

2) 장부서식으로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물품카드등록부, 도서대장으로 정하고 있음

구입량과 사용일자별 사용량 및 재고량 등을 물품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는데도 감사일 현재까지도 유류물품대장을 작성하지 않는 등 소모품 수불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청송군 소재 도유림관리사 난방용 유류구매 현황(2019. 12. ~ 2022. 2.)**

- 내용 생략 -

**조치할 사항      산림환경연구원 북부지원장은**

앞으로 물품 수입 및 출금 등 기재하는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소모품 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